

소속	주식회사 유나환경기술연구소 (노동부 제 2015 - 120002 호)		
구분	성명	자격 종목·등급	자격증 번호·조사자교육 수료
측정자	강길수	대기환경기사 석면조사자교육	78261703413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2011.08.25)
분석자	정경수	화학공학전공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2013.07.25)

주식회사 유나환경기술연구소장



<작업 중>

1. 석면비산 측정 결과

2017.07.21						
측정지점	시료번호	유량(l/min)		시간(분)	측정 결과(f/cc)	검출석면
		분당	총(L)			
부지경계선	P1	10.08	2,419	240	0.001	기준미만
부지경계선	P2	10.08	2,419	240	0.000	기준미만
부지경계선	P3	10.11	2,426	240	0.000	기준미만
부지경계선	P4	10.10	2,424	240	0.000	기준미만
위생설비	P5	10.06	402	40	0.000	기준미만
음압기	P6	10.08	403	40	0.002	기준미만
작업장주변(실내)	P7	10.08	1,209	120	0.001	기준미만

2. 석면비산 측정 지점 위치



3. 석면비산 측정 현장사진

측정지점	P1 (부지경계선)	P2 (부지경계선)	P3 (부지경계선)	P4 (부지경계선)
측정사진				
측정지점	P5 (위생설비)	P6 (음압기)	P7(작업장주변, 실내)	
측정사진				

1. 석면비산 측정 결과

2017.07.22						
측정지점	시료번호	유량(l/min)		시간(분)	측정 결과(f/cc)	검출석면
		분당	총(L)			
부지경계선	P1	10.11	2,426	240	0.001	기준미만
부지경계선	P2	10.05	2,412	240	0.000	기준미만
부지경계선	P3	10.04	2,409	240	0.000	기준미만
부지경계선	P4	10.07	2,416	240	0.000	기준미만
위생설비	P5	10.10	404	40	0.000	기준미만
음압기	P6	10.14	405	40	0.002	기준미만
작업장주변(실내)	P7	10.13	405	40	0.001	기준미만
폐기물반출구	P8	10.05	1,206	120	0.002	기준미만

2. 석면비산 측정 지점 위치

〈포항여자중학교〉



3. 석면비산 측정 현장사진

측정지점	P1 (부지경계선)	P2 (부지경계선)	P3 (부지경계선)	P4 (부지경계선)
측정사진				
측정지점	P5 (위생설비)	P6 (음압기)	P7(작업장주변, 실내)	P8(폐기물반출구)
측정사진				

< 작업 중 >

1. 석면비산 측정 결과

2017.07.25						
측정지점	시료번호	유량(l/min)		시간(분)	측정 결과(f/cc)	검출석면
		분당	총(L)			
폐기물반출구(상차)	P1	10.10	404	40	0.000	기준미만

2. 석면비산 측정 지점 위치

<포항여자중학교>



3. 석면비산 측정 현장사진

측정지점	P1 (폐기물반출구,상차)			
측정사진				

〈개별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 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 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 (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 (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함.

4.고찰 및 결론

- 4.1 이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 4.2 법정시료 개수에 부합하는 시료를 채취 하여 분석한 결과 공기 중 석면 농도는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 되었다.
- 4.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따랐다.
- 4.4 분석결과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
- 4.5 본 조사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